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법무 02114-124	(전화번호 307)	전결규정	조항 전결사항
처리기간		시	장	2038
시행일자	1986.			11.23 결재
보존년한	준 영 구			
보	부 사 장	7.23.11.23	협	1986.11.23
조	기획관리실장	EOT		시장
판	법무담당관	AJ 11.23		
기안책임자	진 익철 1986. 11. 23			
경 유		발송	검열	
수 신	각 안 참 조	1986.11.24	1986.11.24	
참 조		서울특별시	공문	
제 목	서울특별시 한강 시민공원 시설 및 녹지관리 규정	11.24		
(제 1안) 내부결재 6423				
1. 공원 30114-643 (86.8.22) 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 조성한 한강시민공원 또는 제방의 녹지와 공원 관련 시설 및 시민편의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단 사항을 규정하고자 별첨(안)과 같이 "한강 시민공원 시설 및 녹지 관리 규정" 을 제정 발령코자 합니다.				
첨부 1) 제정사유 및 주요골자 1부				
2) 동관리규정(안) 1부 끝				
(제 2안)				
수신: 공보관				
제목: 사보 계재				

별첨 서울특별시 한강서민공원 시설 및 녹지관리

구정을

시보에 케재 발령할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1부 끝.

A circular library stamp with the text "STATE LIBRARY OF NEW SOUTH WALES" around the top edge and "AUSTRALIA" at the bottom.

(제 3 안)

수신: 공원과장

제 목 : 훈령 발령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시설 및 녹지관리

규정을

별첨과 같이 시보에 게재 발령하였으나 시행에 차오 없도록 할 것

첨 부 : 서울특별시 훈령 제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시설 및 녹지관리 규정

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19 86년 11 월 24 일

서울특별시장

인

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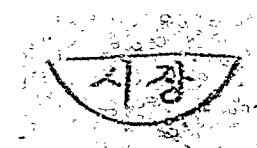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한강시민공원 시설 및 녹지관리규정

제정의 유

한강시민공원 또는 제방의 녹지와 공원관련시설 및 시민편의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쾌적한 도시 경관을 보존하고 건전한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강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주요골자

- 한강시민공원, 녹지(잔디, 초지 등)시설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사항
- 한강시민공원, 녹지시설물의 이용제한 및 금지에 관한사항
- 편의시설 및 기타 시설 등의 관리에 관한사항



서울특별시 훈령 제 호

서울특별시 한강 시민공원 시설 및 녹지관리 규정

제1조(목적) 하천법 제16조 제1항 단서규정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 조성된 한강 시민공원 또는 제방의 녹지와 공원관련시설, 시민편의 시설 기타 이와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관련 시설을 건전한 시민 휴식공간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한강관리의 적정을 위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자) 이 규정에 의한 모든 시설은 한강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유지관리 한다.

제3조(관리대상) 소장이 관리하여야 할 시설물은 다음 각호의 계기하는바와 같다.

1. 녹지시설 : 고수부지 및 제방의 초지, 잔디, 기타 녹지보호시설
2. 조경시설 : 화단, 분수, 조각 상징물, 기타 조경시설
3. 유희시설 : 그네, 미끄럼틀, 소규모 모래사장, 연날리기장, 기타 어린이의 놀이를 주목적으로 설치한 시설 및 그 부속시설
4. 편의시설 : 장의자, 음수대, 기타 시민편의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
5. 체육시설 : 경구장, 축구장, 기타 구기를 사용하는 운동시설 및 체력단련을 위하여 설치한 운동시설
6. 기타시설 : 관리사무소, 기타 녹지 및 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 시설

제4조(녹지시설관리) ① 소장은 녹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게기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풀베기 및 잡초제거

2. 물주기, 물빼기, 복토, 시비 및 병충해 방제

3. 신식, 보식 및 고사목 제거

② 소장은 시민의 사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훼손된 녹지 지역에
잔디나 수목을 보식하여 경관을 보전토록 한다.

다만, 녹지대로 유지관리 하는것이 오히려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한다
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녹지 시설에서 제외할수 있다.

제5조(조경시설관리) ① 화단은 화목류 또는 초화류 식재지로 구분하여 화단

으로 조성하고 계속하여 화단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분수대는 동절기 및 우기에는 이를 분출 가동하지 아니
하며 분수기능 유지, 동파예방,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조각 상징물, 기타 조경시설은 그 외관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유획시설관리) ① 유획시설은 안전하고 원활한 기능을 유지케
하고 정기 및 수시 안전도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도에 이상이 있거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시설과 보수증
의 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표지를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③ 유획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또는 사고발생 위험 있는
시설에는 관리할자를 고정 배치하여야 한다.

제7조(편의시설관리) ① 편의시설은 시민의 사용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의자 음수대, 기타 편의시설이 손괴된 경우에는 시급히 보수하여 시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체육시설관리) ① 정구장등 구기를 사용하는 시설은 구기 사용에 지장이 없는 상태로 유지관리하고 기타 체육시설은 해당 운동이 가능한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사용료를 징수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얻은 후 그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시설별로 관리할자를 고정배치하여 사용료 납입여부를 확인케 하고 그 시설이 적정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시설을 단체가 일시적으로 독점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장이 그 이용목적을 검토하여, 건전한 내용일 때에는 이용시간을 정하여 학생단체, 청소년단체, 시민단체 순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④ 잔디보석, 신식, 활착 및 보수 등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일정기간 금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당해 시설구역내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기타시설의 관리)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이외의 시설에 대하여는 위의 규정에 준하여 그 시설의 특성에 맞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순찰) 소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유지 ~~진단과 예측~~ 또는 유실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 점검과 수시점검 계획 및 일일 순찰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점검 및 순찰 결과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보수) 소장은 시설별로 정기 및 수시정비 계획과 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고 적정하게 이를 교체, 복구, 제거, 도색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한 및 금지) ①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게기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 또는 인근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폭우나 홍수로 인하여 이 규정에 의한 시설이 침수되었거나 시설의 침수가 예상되는 때
2. 시설의 복구, 기타 수리등 공사중인 때
3.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때
4.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제1항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보기쉬운 장소에 그 제한 또는 금지를 표시하는 팻말이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대부분 또는 중요시설에 대하여 이용제한 또는 이용을금지하는 경우에는 시설명, 위치, 사유등 그 내용을 명시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대피) 폭우나 홍수로 인하여 시설의 유실 또는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진행중인 때에는 이동이 용이한 시설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복구) 소장은 폭우나 홍수로 인하여 시설이 유실, 파손 및 훼손 되었을 때에는 피해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자재를 동원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소장은 홍수나 침수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중요시설이
유실, 훼손된때에는 그 시설명과 수량, 면적등 피해상황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대장비치) 소장은 한강시민공원의 지구별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시설물 현황, 시민이용, 홍수, 침수, 시설개선, 변경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7조(세부지침) 이 규정에 의한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시장



요약전

안건

서울특별시 위임전결 규정 개정규정

주요골자

法規整備審議會 議案

○ 개정이유

업무의 합리적 배분과 민원사무의 하부이양으로 대민봉사

행정구현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 주요골자

(내부위임 현황)

구 분	현 행	조 정		조 정 후
		신 규	삭 제	
계	313	12	6	319
시장 → 구청장	250	2	6	246
시장 → 사업소장	52	10		62
시장 → 전기관	11			11